

Expansion of COVID-19 related LST incentive on cars ^{P1}

DGT issues guidance on VAT on land transactions ^{P2}

COVID-19로 인한 차량 관련 LST 과세 특례 확대

최근 재무부(MoF)는 기존의 PMK-20에 따라 사치세(Luxury-goods Sales Tax, LST)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차량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규정 PMK-31¹ 을 발표했습니다. PMK-20²에 대한 논의는 TaxFlash No. 06/2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대된 과세특례 적용범위

PMK-31은 LST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두 가지 차량 유형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대상 차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배기량이 최대 1,500CC 인 Sedan 또는 Station Wagon(디젤 또는 세미 디젤);
- 배기량이 1,500CC 이하인 Sedan 또는 Station Wagon(디젤 또는 세미 디젤)을 제외한 10 인 미만의 탑승 차량;
- Sedan 또는 Station Wagon(디젤 또는 세미 디젤)을 제외한 10인 미만 탑승 차량에 1 개의 액셀 드라이브 시스템과 배기량 1,500CC 초과 ~ 최대 2,500CC;
- *new*
- Sedan 또는 Station Wagon(디젤 또는 세미 디젤)을 제외한 10 인 미만 탑승 차량으로 배기량이 1,500CC를 초과하여 최대 2,500CC까지 2 개 액셀 드라이브 시스템 보유 차량 - *new*

¹ MoF Regulation No.31/PMK.010/2021 (PMK-31) dated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1

² MoF Regulation No.20/PMK.010/2021 (PMK-20) dated and effective from 26 February 2021

또한, 동 규정상 Local Contents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70% Local Contents가 요구되었던 기존 법에 비해 상기 언급된 차량에 대해서 Local Contents 요건은 60%로 완화되어 해당 차량의 국내 생산 부품 사용에 대한 의무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동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산업부 법령 No.839 (2021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목록에 29 개 항목이 있습니다.

상기 차량에 대한 GR-22³에 따른 현재 LST 세율은 (a), (b), (c) 및 (d)에 대해 각각 30 %, 10 %, 20 % 및 40 %입니다. 단, 동 세율은 GR-22를 대체하기 위해 2021년 10월 15일에 GR-73⁴이 발효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례 사항

정부가 부담하는 LST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상기 (a) 및 (b) 유형의 차량의 경우
 - 2021년 4월 - 5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100%;
 - 2021년 6월 - 8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50%;
 - 2021년 9월 - 12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25%.
- b. 상기 (c) 유형 차량의 경우
 - 2021년 4월 - 8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50%;
 - 2021년 9월 - 12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25%.
- c. 상기 (d) 유형 차량의 경우
 - 2021년 4월 - 8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25%
 - 2021년 9월 - 12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12.5%

기타 적용 요건

행정처리 관련 주요 의무사항은 PMK-20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실행보고서(법정서식에 따라 각 과세기간 별 두 번 제출된 특정 차량의 세부 내역에 대한 목록) 제출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³ Government Regulation No.22 Year 2014 (GR-22) dated on 19 March 2014 and effective from 18 April 2015 as an amendment of Government Regulation No.41 Year 2013

⁴ Government Regulation No.73 Year 2019 (GR-73) dated on 16 October 2019 and effective from 15 October 2021

토지거래에 대한 부가세 관련 국세청 지침 발행

국세청 (DGT)은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와 토지 취득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에 관한 Circular Letter No. SE-28⁵을 발행했습니다. SE-28 은 대부분 기존 및 이전 규정에 따른 토지 관련 부가세 과세처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하기에 설명된 부분에 대해 보다 확실한 국세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토지 조달에 대한 VAT 부과

부가세 과세사업자 (Pengusaha Kena Pajak / PKP)가 정부 기관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VAT 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VAT 는 정부 기관에 토지를 공급하는 PKP 가 징수합니다. 따라서 PKP 는 VAT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에 납부 및 월별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생산이전 단계에서 취득한 토지의 매입부가세 공제

a. 옴니버스 법상 Job Creation Law 제정 이전

옴니버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생산 전 단계에서 취득한 토지의 매입부가세 공제 여부는 해당 토지가 자본재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토지가 자본재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부가세는 해당 토지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를 감가상각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사업에 대한 매매목적의 토지인 경우와 같이 토지가 비 자본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산 전 단계에서의 매입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b. 옴니버스 법 발효 이후

옴니버스 법에 따라 생산 이전 발생한 토지 취득 관련 매입부가세는 해당 토지가 자본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⁵ Circular Letter No. SE-28/PJ/2021 (SE-28) dated and effective from 19 March 2021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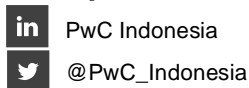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www.pwc.com/id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1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